#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0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황정아

조인철 · 김동아 · 최기상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조계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 ·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

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 법률 제 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2.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조건
- 3.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 4.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생 략)	제7조(모집과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2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	<u>다음 각 호의</u>
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	
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렁으로	
<u>정하는</u>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
	중 등의 신체적 조건
<u>&lt;신 설&gt;</u>	2.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임
	신, 출산 등에 관한 조건
<u>&lt;신 설&gt;</u>	3.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재
	<u>산 등에 관한 조건</u>
<u>&lt;신 설&gt;</u>	4.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재산 등에 관한 조건
<u>&lt;신 설&gt;</u>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